

의안번호	2207048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5. 1. 9.
추 계 번 호	24B6334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00만원(연평균 24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신설(손실보상대책위원회)	2.4	2.4	2.4	2.4	2.4	12	2.4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현행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신설(손실보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7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3.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u>전문가</u> ※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면서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임	의무규정
2	안 제8조제1항(보상금)	이 법에 따른 <u>보상금</u>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및 <u>어류매각 손실액</u>(양식 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말함)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함(제1항) ※ 보상금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하는 것임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신설(손실보상 대책위원회)	○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등
2	안 제8조제1항(보상금)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수면 가두리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및 피해에 대한 인과성 조사('23.2.16.~9.15.)를 추진한 결과, 면허연장 불허와 어가 하락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에 곤란하고 어가 하락은 영향이 미미('95~'98년, 1.8원/kg~2.52원/kg 하락)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어류매각 손실액 확인 입증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요인을 구분해서 산정하기 곤란하며, 가두리 양식장별로 면허 종료 시기에 양식중이었던 어종별 물량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회는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에 관한 입증 및 적절한 손실보상액 산출을 위한 서류상 증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u>보상금 산정범위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제외하고 수정가결한 바 있음</u>¹⁾ 다만, 당시 발의된 법률안에서 국회입법청원²⁾시 제출된 자료에 한정하여 비용추계 금액을 제시한 바 있음 ※ [참고자료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13247) 비용추계서 요약 참고

1) 의안번호 211324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발의 2021.11.11., 제397회 제4차 국회본회의 가결 2022.5.29.)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상금 산정범위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하려는 경우 손실액에 관한 입증 및 적절한 손실보상액 산출을 위한 서류상 증빙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산정범위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삭제하고, 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의 대상에 「양식 산업발전법」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외에 같은 법 제65조(양식창업 지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위원 추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신설)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 (가결) 2020. 4. 30. 제20대국회 제377회 제3차 본회의
 - (시행) 2021. 5. 27. [법률 제17327호, 2020. 5. 26., 제정]
 - ※ [참고자료 1]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개요 참고
- 해양수산부는 손실보상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중³⁾
 - (위원회 구성일) 2021.5.27.
 - (위원장) 해양수산부차관
 - (위원 수) 총 15명
 - － (당연직 공무원) 총 10명(해양수산부차관, 어촌양식정책관, 8개 지자체 국장급⁴⁾)

제12조의2 신설 등).

2) 청원번호 1800167, 접수일 2010.09.30.

1975년 12월 정부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국회에서 청원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수산업법」 제81조의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행정기관인 해양수산식품부에 촉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함.

3) 1. 해양수산부, 「2024년 11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12.19.

2.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4)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정책관, 충청북도 농정국장,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 (위촉직위원) 총 5명(변호사 1, 손해사정사 2, 감정평가사 2)
- (회의개최 횟수) ('22년) 1회, ('23년) 1회, ('24년) 4회
 - 2024년 총 4회의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신청 기간 중 접수된 총 194건 중, 총 85건(약 198억원) 보상 대상 및 보상금 결정
- 개정안에 따라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에 대하여 다음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
 - (민간위원 추가 위촉 수) 2명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 (회의개최 횟수) 연간 4회
 - 2024년 회의 개최 실적 참고
 - (회의참석 사례금)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⁵⁾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	2	2	2	2	10
회의 개최횟수(B, 회)	4	4	4	4	4	20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회의참석 사례금(D=A×B×C, 백만원)	2.4	2.4	2.4	2.4	2.4	12

자료: 현행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장,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5)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목적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21.5. 시행)
 - 가결: 2020.4.30. 제20대국회 제377회 제3차 본회의
 - 시행 2021. 5. 27. [법률 제17327호, 2020. 5. 26., 제정]

□ 법 제정 후 손실보상 진행 경과

<손실보상 진행 경과>

연월	내용
2021.5.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가결: 2020.4.30. 제20대국회 제377회 제3차 본회의 - 시행 2021. 5. 27. [법률 제17327호, 2020. 5. 26., 제정]
2021.11~2022.9	피해어업인의 피해증빙자료 부재로 보상금 산정불가하여 손실보상 실태조사
2022.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이양수)
2024.	1.2. 특별법 개정(보상금 산정기준·방법, 보상금 상속 근거 등)
	4.3. 개정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
	5.13. 보상금 신청 공고
	5.20~8.27. 보상금 신청·접수(총 194건 접수)
	6.26.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13건 보상 결정)
	7.29~8.2. 제2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서면심의, 17건 보상 결정)
	9.30. 제3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30건 보상 결정)
	12.2. 제4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25건 보상·1건 미보상 결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손실보상 실적

- 2024년 보상금 신청 공고 및 접수를 통해 손실보상 시작
 - 2024년 중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총 85건(약 198억원) 보상대상 결정
 - 2024년도 손실보상 예산으로 제1·2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대상자에 보상 지급 및 공탁 완료(총 29건, 약 76억원)
 - 제2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결정된 보상대상자 중 지급 미신청 1건(2억원)과 제3·4회 보상대상 결정된 총 55건(120억원)에 대하여 2025년도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지급 예정
- * (제1회) 6.26, 총 13건(약 34억원) 보상 결정,
 (제2회) 8.2, 총 17건(약 44억원) 보상 결정,
 (제3회) 9.30, 총 30건(약 73억원) 보상 결정,
 (제4회) 12.2, 총 25건(약 47억원) 보상 결정

□ 예결산 현황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손실보상 예결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내수면자원조성 (3141-303)								
-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업 보상		11,563	83	17,372	11	8,399	7,929	14,917
· 손실보상금	보상금 지급	11,446	-	17,348	-	7,925	7,564	14,905
· 대책위원회 운영비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36	6	23.5	11	22	21	12
· 일반연구비	실태조사 등	81	77	-	-	450	342	-
· 임차료		-	-	0.5	-	2	2	-

주: *) 예산현액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47) 비용추계서 요약6)

-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2010년 9월 30일 ‘내수면 가두리 양식
업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입법청원(100인)’을 대상으로 추계함
- 청원인 외에도 피해어업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
로 보상대상자를 청원인으로 한정함
 - 보상금 비용은 손실보상 입법청원에 첨부된 2건의 손해보상금 청구 사건
및 1건의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생산시설 규모와
100㎡(=1조)당 연간생산량을 기준으로 추계함

□ 어가하락 손실액

- 총 생산시설 184,200㎡(=1,842조)에 평균 생산량 11,000kg⁷⁾과 어가하락
분 850원/kg⁸⁾을 적용하여 1998년 기준, 172억 2,200만원 산출
- 여기에 1998년부터 2021년까지는 통계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2년
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314억 700만원으로 산출

[어가하락 손실액]

(단위: 백만원)

생산시설(㎡)	산식	어가하락 손실액 (1998년 기준)	2022년 환산액
184,200 (=1,842조)	1,842조×11,000kg×850원 (kg당 어가하락분)	17,222	31,407

6) 의안번호 211324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발의 2021.11.11., 제397회 제4차 국회본회의 가결 2022.5.29.)

※ 보상금 산정범위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제외하고 수정가결

7) 1조(100㎡)당 평균생산량이 13,329kg이나 미감정 양식장이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평균 생산량을
11,000kg으로 하향 추정

8) [감정평가서에서 평가된 어가의 변화]

가. 정상적인 시기의 연도별 평균 출하어가 1994년도 : 3,560원/kg 1995년도 : 3,370원/kg ----- 평균 3,465원/kg	나. 양식장 철거시기의 연도별 평균 출하어가 1996년도 : 2,770원/kg 1997년도 : 2,460원/kg ----- 평균 2,615원/kg
다. 어가하락분 : 850원/kg (3,465원 - 2,615원)	
어가하락 손실액 172억원=1,842조×평균생산량 11톤×어가하락분 850원/kg	